

|              |                       |
|--------------|-----------------------|
| 의안번호         | 제333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2년 6월 일<br>(제311회)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강 현삼 의원외 6명 |
|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1일 |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현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333 |
|----------|-----|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1일

발의자 : 강현삼,김광수,노광기,  
손문규,심기보,김도경,  
장선배

## 1. 제정이유

-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선진복지도 실현
- 진폐로 추정되는 산재불인정 받고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

## 2. 주요내용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 추진(안 제3조)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비 지원(안 제5조)
- 진폐근로자의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 3. 제정 조례안 : 별첨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 수반(비용추계서) : 별첨
- 집행기관 협의 여부 : 여
- 입법예고 여부 : 여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충청북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4. 그 밖의 도지사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진폐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에서 정하는 조치에 의해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진폐로 추정되는 의증환자에 대한 지원

## 2. 비용 발생요인

- 진폐의증 환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지원
  - ※ 진폐판정 환자는 산업재해 보상법등에 의해 지원 받으므로 비용 발생 없음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 의증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자 : 12명(의증환자 6명, 배우자 6명)
  - 지원액 : 12명 × 50만원 = 6,000천원

### 나. 추계 결과

- 의증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추계(매년) : 6,000천원
  - 의증환자, 배우자 : 6,000천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자체재원 사용(도비 30%, 시군비 7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이 주 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분                     |        | 1차년도<br>(2013년) | 2차년도<br>(2014년<br>) | 3차년도<br>(2015년) | 4차년도<br>(2016년<br>) | 5차년도<br>(2017년<br>) |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출                     |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30,000 |
| 의증진폐환자 의료<br>비 지원(12명) |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30,000 |
| 재원조달                   |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30,000 |
| 의존<br>재원               | 소계     |                 |                     |                 |                     |                     |        |
|                        | 국고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br>수입               | 소계     |                 |                     |                 |                     |                     |        |
|                        |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도 비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9,000  |
| 자체재원                   |        |                 |                     |                 |                     |                     |        |
| 기금                     |        |                 |                     |                 |                     |                     |        |
| 시·군비                   |        | 4,200           | 4,200               | 4,200           | 4,200               | 4,200               | 21,000 |
| 기타<br>(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